

1.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

「통계법」(법률 제19543호, 2023. 7. 18. 공포, 2024. 1. 19. 시행) 개정
및 「통계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4. 1. 19. 시행) 개정
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·조항번호를 현행화하기 위하여
「경제총조사 규칙」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경제총조사 규칙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의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경제총조사 규칙」의 개정)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”를 “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농림어업총조사 규칙」의 개정)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”를 “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인구동향조사 규칙」의 개정)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9조의3제1항”을 “제39조의4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인구주택총조사 규칙」의 개정)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”를 “제5조의4 및 같

은 법 시행령 제2조의4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. 1. 19.부터 시행한다.

경 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통계법」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----- ----- -----.

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통계법」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----- ----- -----.

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「통계법」 제24조의2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</u> 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조사대상) 「통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39조의3제1항</u> 에 따른 인구동향조사(이하 “인구동향조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. 1. 2. (생략)	제2조(조사대상) ----- ----- <u>제39조의4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
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통계법」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----- ----- ----- --.